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원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원고들의 특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후 보도하였다면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08. 5. 15. 자 판결(2007가합686)

사실개요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원고들)이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6. 7. 26. 「수요기획」 프로그램 『최초 공개, 국가정보원』 제하의 보도에서 원고들이 중국인과 공모하여 □□□바이오텍이 개발한 △△△△ 균주 생산기술을 도용해 해외 유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방지하였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대표이사 장○○(이하 장○○)은 □□□바이오텍의 효소사양결과, 배양방법 등을 빼내 이를 이용하여 유사 사료첨가제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를 중국에서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방송에서 장○○이 유출한 것은 □□□바이오텍의 바이오기술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 균주 자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원고 ○○○○와 장○○이 공모하여 △△△△ 균주를 변형하였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장○○ 등이 기술유출 혐의로 체포되고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을 보도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방송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일반적인 범죄보도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보도가 주된 취지였고, 다만 방송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자 실제 접수된 사건의 조사과정을 소개한 것이고, 그 소개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들이 일부 특정되었다고 하나 원고들의 상호 등은 이니셜로도 소개되지 않았고, 장○○이나 한국계 중국인 이○○(이하 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특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의 자문을 받았고, 검찰의 공

소장, 제1심 판결문, 각종 보도자료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방송의 기획과 보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686 손해배상(기)

원 고 :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피 고 : 한국방송공사

변 론 종 결 : 2008. 4. 3.

판 결 선 고 : 2008. 5. 15.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수요기획 정규방송 및 평일 저녁 9시 뉴스 시간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담당 PD 또는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낭독하도록 하며, 수요기획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3개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는 효소 및 발효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바이오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7. 26. 11: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1시간 동안 수요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공개, 국가정보원’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활약상을 소개하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수요기획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중국인과 공모하여 소외 주식회사 □□□바이오텍(이하 ‘□□□바이오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 균주의 생산기술을 도용하여 해외로 유출하려고 시도하였고,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이를 방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2) 그러나 ① △△△△ 균주는 기존에 발견된 단백질분해효소인 Serratiopeptidase(이하 ‘SP효소’라 한다)의 일종으로 그 생산기술은 공지의 기술이고, ② 원고들은 중국인과 공모하여 △△△△ 균주에 대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SP효소를 이용하여 사료첨가제 등을 만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 것이며, ③ 원고 ○○○○는 △△△△ 균주를 10% 변형하여 원고 ○○○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 균주와는 별도의 SP효소를 이용해 독자적인 단백질분해효소를 만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들이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의 상호나 인물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원고들을 식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서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로 유출하려고 한 자들이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고, 그 방송 내용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판결 및 각종 보도자료의 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 3. 판단

####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균주의 생산기술

(가)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의 박○○ 박사팀은 1999. 11.경 세계 최초로 무당거미에서 천연단백질분해효소인 △△△△ 균주를 추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당시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그 후 박○○은 △△△△ 등 효소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텍을 설립하

고, 약 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 균주를 사료첨가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SP 효소가 활용되지 아니하던 새로운 영역과 시장을 개척하여 △△△△ 균주의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나) △△△△ 균주의 생산기술은 1999. 6. 18. '한국산 무당거미의 장으로부터 분리된 신규 미생물 및 그로부터 생성된 단백질분해효소'로 특허등록되었고, 2002. 8. 22.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정을, 2004. 10. 독일에서 브라운호퍼 기술인증증, 2006. 10. 11.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인정을 각 받았다.

(다) 미국의 비즈니스 뉴스 채널인 CNBC는 2006. 11. 12. 및 11. 13. 양일에 걸쳐 약 30분 동안 Asia Market Week에서 △△△△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과학기술부 정책홍보실은 2006. 11. 18. '국내 무당거미에서 개발된 효소제품 세계시장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토착 무당거미로부터 분리된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높은 활성을 보이며 저온이나 높은 염분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산업적 공정전환효소 △△△△ 개발, 개발된 제품 △△△△ FACIAL GEL의 미국·일본 등 국외시장 개척으로 국내 바이오제품의 세계화 교두보 확보, △△△△은 미국 CTFA에 화장품 원료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관련 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내년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2) 장○○에 대한 재판

(가) 원고 ○○○ 대표이사 장○○은 2002. 5. 2.경 □□□□바이오텍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 균주를 활용한 사료첨가제 분야의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가 2004. 11. 30.경 □□□□바이오텍의 연구개발원 김○○과 함께 퇴사하면서 □□□□바이오텍의 효소 사양결과, 효소배양방법

및 사료첨가제 제조·판매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였고, 2005. 1. 20. 바이오제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 ○○○을 설립한 후 □□□바이오텍의 효소 사양결과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 균주를 이용한 사료첨가제와 유사한 사료첨가제(이하 '유사 사료첨가제'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6. 1. 15. 한국계 중국인 이○○를 통해 중국시장에서 유사 사료첨가제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계획하면서 중국내 현지 회사인 베이징 □□□바이오텍 주식회사, ◇◇◇생명공학 주식회사와 함께 합자회사인 ○○○-○○○○○ 베이징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 ○○○○○는 천연단백질분해효소를 제조하여 ○○○-○○○○○에 공급하며, ○○○-○○○○○는 이를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은 2005. 8.경 세계 최초로 개발된 △△△△ 생산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세워진 □□□바이오텍의 핵심 연구원과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여 8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라) 장○○, 김○○은 2006. 4. 14.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83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는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균주에 대한 상동성 검사를 실시하여 2006. 4. 20. '원고 ○○○○○와 □□□바이오텍의 균주는 생리적으로 특성이 유사하나 원고 ○○○○○의 균주는 *Serratia marcescens*의 일종, □□□바이오텍의 △△△△ 균주는 *Aranicola proteolyticus* 일종이고, 다만 원고 ○○○○○가 위 균주를 이용하여 원고 ○

○○○에게 제공한 단백질효소를 만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제출하였다.

(바) 장○○은 2006. 5.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김○○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 사실은 '장○○, 김○○이 □□□바이오텍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 등의 효소 사양결과 등 영업기술, 배양방법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텍에서 생산하는 사료첨가제와 유사한 사료첨가제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사) 장○○, 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06. 9. 29. 항소 기각판결(대전고등법원 2006노949호)이 선고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 26.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6도7206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3) 이 사건 방송의 기획 및 내용

(가) 피고는 2006.경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활약상을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수요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원고들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사과정을 취재하였고, 이 사건 방송 보도를 위해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의 협조를 받아 자문을 구하였으며, 장○○에 대한 공소장과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방송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 불법정치사찰, 민주화운동 탄압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민주화 정부가 출범하고 산업정보화 시대에서 그 역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비공개되었던 국가정보원의 내부와 사무분담,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선발과정과 생활의 애로점 등이 보도되었고, 그 활약상을 소개하기 위하여 실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이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수개월 동안의 조

사와 연구 등을 거쳐 이를 검찰에 이송하는 과정이 보도되었다.

(다) 이 사건 방송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① 박○○이 세계 최초로 무당거미에서 천연단백질효소를 생산하는 바이오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 ② □□□바이오텍에서 근무하던 장○○, 김○○이 회사를 그만두고 원고 ○○○을 설립하여 □□□바이오텍의 바이오기술과 비슷한 기술로 유사 사료첨가제를 생산하였고, ③ 장○○은 한국계 중국인 이○○와 공모하여 위 바이오 생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시도하였으며, ④ 그 과정에서 양해각서에 당사자로 참여한 원고 ○○○○○가 □□□바이오텍의 균주를 10% 변형하여 원고 ○○○에게 공급하였고, ⑤ 그 후 장○○, 김○○이 2006. 3. 30. 기술유출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 이송되었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의 상호나 장○○, 이○○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사무실의 위치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다만 이 사건 방송 중 원고 ○○○○○가 위치한 대전 바이오벤처타운의 전경과 사무실 입구에 걸려있는 미생물디스플레이 패널, 원고 ○○○이 위치한 중소기업센타 건물 전경과 유사 사료첨가제의 포장용기가 화면에 노출되었다.

####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언론과 방송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그 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리는 것이었고, 그 업무 중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겨지는 산업기밀의 보호 업무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그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방지책 역시 국민의 큰 관심사인 만큼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박○○이 세계 최초로 무당거미에서 천연단백질효소인 △△△△ 균주를 추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또한 △△△△ 생산기술은 특허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사실, ② 장○○은 □□□바이오텍의 효소사양결과, 배양방법 등을 빼내 이를 이용하여 유사 사료첨가제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를 중국에서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방송에서 장○○이 유출한 것은 □□□바이오텍의 바이오기술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 균주 자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원고 ○○○○○와 장○○이 공모하여 △△△△ 균주를 변형하였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장○○, 김○○이 기술유출 혐의로 체포되고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을 보도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① 이 사건 방송은 일반적인 범죄보도가 아

나라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보도가 주된 취지였고, 다만 방송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자 실제 접수된 사건의 조사과정을 소개한 것이고, ② 그 소개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들이 일부 특정되었다고 하나 원고들의 상호 등은 이니셜로도 소개되지 않았고, 장○○이나 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특정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③ 이 사건 방송은 장○○,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에 보도되었는데, 원고들이 기술유출 범죄에 관련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방송의 보도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④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가정보원 산업보안팀의 자문을 받았고, 검찰의 공소장, 제1심 판결문, 각종 보도자료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방송의 기획과 보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

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 즉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판결 2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자 판결(2007나7861)

### 사실개요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이○○(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경향닷컴(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연합뉴

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측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입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 경향닷컴은 2003년 8월 29일자 『1천 500만 원 빛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빛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을 자르고 유

기한 ‘엽기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검찰은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는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786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이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경향닷컴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칸)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건물 15층

대표이사 조 성 환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영 인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7. 7. 2. 선고  
2006가소45979 판결

변론종결 : 2007. 11. 30.

판결선고 : 2007. 12. 1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7. 25. 피살된 망 이□□의 형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범죄혐의 및 긴급체포

(1) 망 이□□은 2003. 7. 25. 22:40경부터 다음날 00:40경 사이에 경남 ○○시 또는 ○○군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망치와 같은 둔기로 머리를 수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체는 2003. 8. 7. 10:10경 경남 ○○군 ○○리 소재 ○○주유소 앞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

(2) 위 사건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경찰

관들은 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의 청바지와 양말만을 보고 자신의 동생이 틀림없다고 하면서도 사체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여 원고를 용의자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이□□의 이 사건 사고 전후 전화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 등의 당일 행적 및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원고의 차량에 있던 운동화 등을 압수하였다. 조사 및 감식 결과 이□□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승용차에 있던 운동화에서 이□□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3) 위 담당경찰관들은 원고에 대하여 살인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자 다른 증거들로 미루어 원고가 살인하였다고 판단하고, 2003. 8. 28. 06:23경 ○○경찰서에서 원고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내용

(1) 경남지방경찰청은 2003. 8. 28. ○○경찰서로부터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검거보고(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접수되자, 당시 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이□□이 부친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1,5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한 것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망치와 같은 둔기로 이□□의 머리 좌우측 측두부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살해한 이□□을 불상의 장소에서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 모두를 절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시 불상경 경남 ○○군 ○○면 ○○리 소재 구 ○○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논 언덕에 이□□의 사체

를 유기한 것이다’는 요지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원고 및 이□□의 주소, 직업, 나이, 관계, 실명 등이 적혀 있었고, 수사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결과로서 원고의 차량속에 있던 운동화에 대한 감정결과, 범행 후의 원고의 행동 및 진술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연합뉴스에서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연합뉴스와 기사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게재 또는 참고해오고 있던 피고는 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2003. 8. 29. “1천 500만 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을 자르고 유기한 ‘엽기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경찰서는 29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 1,5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이모 씨(45. ○○시 ○동)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5일 새벽 동생(39)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군 ○○면 ○○리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유기한 혐의다. 이씨는 2년여 전 숨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금 4천 500만 원 중 동생뮌인 1천 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동생의 독촉을 받아오던중 사건 당일 경기도에 사는 동생을 양산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동생을 살해한 뒤 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체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를 모두 잘라냈으며 이달 초 동생이 가출한 뒤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씨는 사체 유기 이후 동생이 아버지를 수급자로 하는 수천만 원의 보험

에 가입한 것을 알고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체유기 장소 인근 주유소에 ‘사체를 찾아보라’는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이 우편물을 받은 주유소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카드빚 4천여만 원을 비롯한 주식 및 아파트 매입 등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생활고 때문에 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동생 보험금까지 노리다 달미를 잡혔다.<○○/연합>

라. 이 사건 보도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

(1)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2003. 7. 25.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시 ○○동 소재 ○○공원묘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합계액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이□□에게 주어야 할 돈 1천여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한 불만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비라 투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직경 약 3센티미터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측두부에 3회, 좌측 측두부에 1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군 ○○면 ○○리 소재 ○○주유소 맞은편 구 ○○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언덕에서, 전향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실어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위 장소에 버려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03고합26)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였는바, 부산고등법원(2004노112)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5도5440)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증 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성씨, 나이, 주소, 이□□과의 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을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건 기사의 객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 만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는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

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2) 판단

방송,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

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 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사실확인을 위하여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이□□의 머리 등을 든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

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으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직업,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보도의 형식과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07. 12.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 홍 만

판사 이 영 선

판사 박 동 복

□

판결 3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자 판결 (2007가합9017)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27일 우○○(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그 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하던 사람들 중 급성녹내장에 걸리거나 자살을 기도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인터뷰와 함께 원고 병원을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자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주장에 대해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어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급성녹내장

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원고가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 외래교수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대한비만체형의학회 등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전공과 관계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4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29)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반론보도를 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합9017 정정·손배청구

원 고 : 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태 원

Ⅲ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국빌딩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변 론 종 결 : 2007. 11. 29.

판 결 선 고 : 2007. 12. 2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모두 삭제하라.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 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4. 만일 피고가 위 제2, 3항 기재 일자에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위 제2, 3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 중 원고 및 원고 운영 병원의 영상을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을 삭제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 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오른쪽 화면 상단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원고는 뉴스데스크의 '알고보니 간질약'이라는 보도 및 뉴스 후의 '병주고 약주고'라는 보도에서의 토파맥스 관련 녹내장 부작용과는 관계없고,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약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5 '정정보도문요구문'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에서 ○○○○○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피고 소속 김△△ 기자는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 등을 접하게 되자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을 보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김△△ 기자는 실제로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기 위하여 실험을 위한 연기자를 환자로 위장시켜 다이어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김△△ 기자는 위와 같은 실험으로 얻은 처방전 중 급성녹내장의 부작용을 일으킨 토파맥스를 처방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원고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고 속이고 위와 같은 처방전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 상황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원고 병원의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도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을 포함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도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藥주고 病주고”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진료 장면 및 원고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록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하였지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병원의 모습과 원고가 촬영된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에서 프로작(항우울제), 써모펜(감기약), 토파맥스(간질약)가 비만치료약으로 처방 가능한 약물임을 알면서, 원고가 마치 비만치료에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처방한 것처럼

럼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조금이라도 식욕 억제제가 있는 약은 모두 비만치료제로 처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간질약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②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에서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고(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뉴스 후에서도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다른 병원에서도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가 원고 병원에서 진찰 받은 후 처방받은 약에도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뒤 이어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다(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3보도라 한다).

③ 피고는, 뉴스 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가지 약을 병합해서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원고가 “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하느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효과면인 것 같아요. 효과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든 환자를 또 계속 오시게 하고 해야지 효과를 많이 줘야 하지만.. 그렇잖아요.”라고 답변하는 내용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에서 피고가 항우울제와 감기약 간질치료제 등 다섯 가지

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한 원고에게 부작용은 없느냐고 묻자 원고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보도하면서, 원고가 “오히려 비만한 게 병이지,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염려가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병합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4보도라 한다).

④ 피고는 뉴스 후에서, 원고 병원이 원래는 가정의학과 병원인데 비만클리닉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병원 내부는 온통 비만관련 광고로 가득하다고 하였으며, 그 후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 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방송하였다(비만 연구 부분, 이하 이 사건 제5보도라 한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또는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화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시청자가 원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에서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참조).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 중 00:19에서 00:20 사이에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하였고, 02:08에서 02:16 사이에 같은 날 밤 10시 50분에 뉴스 후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것이라고 광고를 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35:59에서 36:01 사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된 바 있던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하였고, 36:09에서 36:16 사이에 화면의 절반 중 윗부분을 뿌옇게 처리하여 원고 병원의 대기실 장면을 내보냈으며, 21:18에서 21:19사이에 원고 병원의 복도 장면이, 21:32에서 21:34 사이에 원고 병원 건물의 외부 전경이 각 보도되었고,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 중 수

차례에 걸쳐 진료실 내부의 모습이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의 상호를 알거나 원고 병원에 와 본 사람이라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통하여 위 각 보도에 나오는 병원이 원고 병원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사가 비록 화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원고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원고 및 원고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 5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이 항우울제이고, 써모펜이 감기약이며, 토파맥스가 간질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5 내지 10, 12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비만성형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로작은 항우울제이기도 하지만 폭식, 과식 등의 식이장애의 경우 식욕증추 안정화를 위하여 처방되기도 하고, 써모펜은 감기약이기도 하지만 운동하기 30분 전에 복용하면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최대화시키는 등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는 약물이며, 토파맥스는 간질약이기도 하지만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보도에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단순히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이라고만 보도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제목을 “알고보니 간질약”이라고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비만치료를 쓸 수 없는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을 단순히 체중감량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제2보도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비

만치료제로 도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이 사건 제5보도

을 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1.부터 4년 간 ○○○○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2007. 3. 1.부터 2년 간 같은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각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2003. 6. 대한비만체형학회의 정회원으로, 2004. 12. 12. 대한지방성형학회의 정회원으로 각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3, 4보도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이 사건 제3보도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19:22에서 19:57 사이에 병원에서 비만치료제로 간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를 보도

한 후, 다른 병원에서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로 하여금 서울 시내에 있는 10군데의 비만클리닉(이하 실험 대상 병원이라 한다)을 찾아가 처방전을 받게 하였고, 그 중 간질약을 처방한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도에서 원고 병원이 급성녹내장 환자가 처방을 받은 병원이 아니라 실험 대상 병원 중 간질약을 처방한 병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이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제4보도

위 보도는 김△△ 기자가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는 내용으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초상권 침해 여부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는바,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위법성조각 여부

#### (1)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2) 공익성

이 사건 각 보도는 비만 치료를 받다가 자살기도를 하고, 급성녹내장을 앓게 되는 등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만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 (3) 진실성 및 상당성

### (가)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비만치료를 효과가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의 대한비만학회는 2003. 4. 16. '비만지침'이라는 자료에서 비만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약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 등을 기재

하여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는 시부트라민과 올리스타트 뿐이라고 발표한 사실, 김△△ 기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김모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이모, 강모, 김모, 김모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의사들의 의학적 자문 등 다양한 취재자료를 수집한 후 이러한 내용을 위 보도에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는 정식으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가 아니고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서 비만치료제로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의 약품이어서 의학계 내부에서 그 효과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약제가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실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심지어 간질약까지"라고 하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의사들이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 등을 과잉 처방함으로써 인하여 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도의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제2, 5보도

위 각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각 허위 내용의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및 방송경위, 그 표현 방법, 위 보도가 방송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의 사회적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2007.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4. 정정보도청구 등에 관한 판단

##### 가. 정정보도 등

(1) 이 사건 제2, 5보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삭제하여야 한다(원고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의 삭제도 구하나, 원고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그 삭제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피고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5보도로 허위사실을 방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별지 목록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보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

하여 보건대, 위 각 보도가 방송된 방식과 그 비중 및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목록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1), (2)항 기재 일자에 (1), (2)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1), (2)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김 은 정

판사 정 경 희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9시 뉴스데스크

본 방송은 2007. 4. 7.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에서 인터뷰한 장면을 보도하였고,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은 급성녹내장이 발병한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간질약인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져서 본 방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뉴스 후〉

본 방송은 2007. 4. 7.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에서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고 있고, 위 병원의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써 비만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없는데도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간질약인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서울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의 의사는 여러 곳의 비만관련 학회 활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져서 본 방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